

# 평창군 다함께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

의안 번호	353
----------	-----

제출년월일 : 2021. 4.

제 출 자 : 평 창 군 수

## 1. 제안이유

맞벌이 가구의 증가 등 양육 환경변화로 아동 돌봄의 사회적 욕구가 증가함에 따라, 돌봄이 필요한 아동에게 적절한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제도적으로 마련하여 초등 돌봄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지역돌봄체계를 구축하고자 함.

## 2. 주요내용

- 가. 아동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군수의 책무와 돌봄서비스 제공 사업에 대해 규정함(안 제3조 및 제4조)
- 나. 다함께돌봄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대해 규정하고 위탁 근거를 마련함(안 제5조)
- 다. 돌봄서비스를 우선 지원할 수 있는 대상과 비용부담 및 감면 대상에 대해 규정함(안 제6조 및 제7조)
- 라. 돌봄 시설간 연계 및 협력체계 강화를 위한 지역돌봄협의체의 설치 및 구성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(안 제8조~12조)

### 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별첨

나. 예산조치 : 리모델링 및 인건비 등 129백만원 반영

다. 합 의 : 해당기관 없음

라. 기 타

- 1) 입법예고(2020.03.16. ~ 04.04.) 결과, 제출의견 없음
- 2) 규제심사 : 심사대상 규제사무 없음
- 3) 부패영향평가 : 원안 동의
- 4) 성별영향분석평가 : 개선의견 없음

## 평창군 다함께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

**제1조(목적)** 이 조례는 「아동복지법」에 따라 평창군 초등학생의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적절한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평창군 다함께돌봄센터의 설치·운영 및 돌봄서비스의 제공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**제2조(정의)**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1. “돌봄아동”이란 평창군(이하 “군”이라 한다)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초등학생이나 군에 소재한 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아동으로서, 초등학교의 정규교육 이외의 시간 동안 보호 및 양육 등의 지원이 필요한 아동을 말한다.
2. “돌봄서비스”란 「아동복지법」 제44조의2제1항 각 호에 따른 방과 후 돌봄서비스를 말한다.

**제3조(군수의 책무)** 평창군수(이하 “군수”라 한다)는 아동 돌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안정적인 방과 후 환경을 조성하고, 이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.

**제4조(돌봄서비스 제공 사업)** 군수는 돌봄아동이 안전하게 보호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.

1. 돌봄서비스 제공을 위한 시설의 확충 및 지원

2. 돌봄서비스 및 프로그램 확대 사업
3. 돌봄서비스 민·관 협력 및 지역연계 활성화
4. 그 밖에 군수가 돌봄서비스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

**제5조(다함께돌봄센터의 설치·운영)** ① 군수는 돌봄서비스의 효율적인 제공을 위하여 「아동복지법」 제44조의2에 따라 평창군 다함께돌봄센터(이하 “센터”라 한다)를 설치·운영할 수 있다.

② 센터는 「아동복지법」 제44조의2제1항에 따른 돌봄서비스를 제공한다.

③ 군수는 센터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센터의 설치·운영에 관한 사업을 다음 각 호의 자격을 갖춘 자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.

1. 「사회복지사업법」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복지법인
2. 「민법」 제32조에 따른 비영리법인
3. 「협동조합기본법」 제4조제2항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
4. 「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」 제4조에 따라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

**제6조(돌봄서비스의 우선 지원)** 군수가 센터에서 돌봄아동에게 돌봄서비스를 제공할 때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아동에게 우선으로 제공할 수 있다.

1. 맞벌이 가정의 아동, 다자녀 가정의 아동, 초등학교 저학년
2. 그 밖에 군수가 우선적으로 돌봄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아동

**제7조(비용의 부담)** ① 군수는 돌봄아동의 보호자에게 돌봄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게 할 수 있다.

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용을 감면할 수 있다.

1.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및 같은 법 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
2.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국가유공자 자녀
3. 「장애인복지법」 제2조에 따른 장애인
4. 「한부모가족지원법」 제5조 또는 제5조의2에 따른 한부모가족 보호대상자
5.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

③ 제2항에 따라 비용을 감면받고자 하는 사람은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.

**제8조(지역돌봄협의체 설치)** ① 군수는 아동 돌봄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돌봄 시설 간 돌봄서비스 연계 · 협력 강화를 위하여 평창군 지역돌봄협의체(이하 “협의체”라 한다)를 구성할 수 있다.

② 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 · 자문한다.

1. 지역 돌봄 운영계획의 수립
2. 돌봄 시설 간의 돌봄서비스 연계 및 조정
3. 돌봄 시설 간 우수사례 발굴 및 정보공유

4.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

**제9조(협의체 구성)** ① 협의체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 이 경우, 위촉직 위원의 수는 특정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.

② 위원장은 아동복지업무 담당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 호선(互選)한다.

③ 당연직 위원은 아동복지업무 담당과장이 되고,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.

1. 교육지원청, 초등학교 등 유관 기관 관계자

2. 돌봄 사업관련 단체·기관·학계 전문가

3. 돌봄 사업과 관련된 군 소속 공무원

4. 그 밖에 군수가 돌봄 사업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

**제10조(위원의 임기 및 해촉)**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,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. 다만, 위촉직 위원 중 공무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.

② 군수는 제9조제3항에 따른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.

1. 위원 스스로 해촉을 원하는 경우

2. 위원이 장기 치료가 필요한 질병이 있는 경우

3. 품위 손상 등으로 위원으로서의 자질이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

4.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

**제11조(협의체 운영)** ① 협의체의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고, 임시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.

1.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경우

2.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

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③ 협의체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, 간사는 협의체 업무담당 팀장이 된다.

④ 협의체는 민·관 협력 돌봄사업 추진의 효율적 운영 및 시설 간 유기적 협업을 위하여 권역별 실무추진팀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.

**제12조(수당 등)** 협의체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「평창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」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. 다만,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하다.

**제13조(지도·점검)** 군수는 이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는 돌봄 시설에 대하여 「아동복지법」 및 관계 법령에 따라 돌봄 시설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지도·점검할 수 있다.

**제14조(준용)** ① 제5조제3항에 따라 센터의 설치·운영을 위탁받은 법인 또는 단체(이하 “수탁기관”이라 한다)는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

은 업무수행에 대하여 「아동복지법」 및 관계 법령에 따른다.

② 수탁기관에 대한 지도·감독, 위탁의 취소 등에 관하여 「평창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」에 따른다.

**제15조(시행규칙)**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## 부칙

이 조례는 202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

# 관계법령 발췌

## □ 「아동복지법」

제44조의2(다함께돌봄센터) ① 시·도지사 및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초등학교의 정규교육 이외의 시간 동안 다음 각 호의 돌봄서비스(이하 “방과 후 돌봄서비스”라 한다)를 실시하기 위하여 다함께돌봄센터를 설치·운영할 수 있다.

1. 아동의 안전한 보호
2. 안전하고 균형 있는 급식 및 간식의 제공
3. 등·하교 전후, 야간 또는 긴급상황 발생 시 돌봄서비스 제공
4. 체험활동 등 교육·문화·예술·체육 프로그램의 연계·제공
5. 돌봄 상담, 관련 정보의 제공 및 서비스의 연계
6.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방과 후 돌봄서비스의 제공

② 시·도지사 및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다함께돌봄센터의 설치·운영을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.

③ 국가는 다함께돌봄센터의 설치·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방자치단체에 지원할 수 있다.

④ 다함께돌봄센터의 장은 시·도지사 및 시장·군수·구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아동의 보호자에게 제1항 각 호의 방과 후 돌봄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.

⑤ 다함께돌봄센터의 설치기준과 운영, 종사자의 자격 등에 관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.

## □ 「아동복지법 시행규칙」

제21조의2(다함께돌봄센터의 설치·운영기준 등) 법제44조의2제1항에 따른 다함께돌봄센터의 설치·운영기준 및 종사자의 자격기준은 별표 1과 같다.

[붙임]

# 비 용 추 계 서

## 1.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조문

- 관련조문 : 조례안 제5조(다함께돌봄센터의 설치·운영)
- 비용발생 요인 : 센터 설치 및 운영에 따른 설치비, 인건비, 운영비

## 2. 비용 추계결과

가. 추계의 전제

- 돌봄 수요 등에 따라 지역 안배하여 다함께돌봄센터 지속적 설치 추진(팀장 1명, 팀원 2명 채용 및 일반운영비)

나. 추계 결과

구 분		2021년	2022년	2023년	2024년	2025년
총 소요액		129	189	260	209	230
다함께돌봄센터 설치	리모델링비 기자재비	70 (1개소)	70 (1개소)	70 (1개소)	-	-
다함께돌봄센터 운영	인건비 운영비	59 (1개소)	119 (2개소)	190 (3개소)	209 (3개소)	230 (3개소)

다. 재원조달 방안 : 해당년도 예산에 일반회계로 편성(국도비)

## 3. 작성자

작성자	평창군 가족복지과장 김복재
연락처	(033) 330 - 2124

**< 연도별 비용추계표 >**

(단위 : 천원)

구 분		1차년도 (2021년)	2차년도 (2022년)	3차년도 (2023년)	4차년도 (2024년)	5차년도 (2025년)	계
<b>세 입</b>		해	당	없	음		
<b>세 출</b>		<b>128,640</b>	<b>188,980</b>	<b>260,190</b>	<b>209,190</b>	<b>229,990</b>	<b>1,016,990</b>
	돌봄센터 설치비	70,000	70,000	70,000	-	-	210,000
	돌봄센터 인건비	55,040	111,380	178,070	195,870	215,370	755,730
	돌봄센터 운영비	3,600	7,600	12,120	13,320	14,620	51,260
<b>재원 조달</b>		<b>128,640</b>	<b>188,980</b>	<b>260,190</b>	<b>209,190</b>	<b>229,990</b>	<b>1,016,990</b>
의존 재원	소 계	77,180	113,390	156,120	125,510	137,990	610,190
	국비보조금	64,320	94,490	130,100	104,590	115,000	508,500
	도비보조금	12,860	18,900	26,020	20,920	22,990	101,690
자체 수입	소 계	51,460	75,590	104,070	83,680	92,000	406,800
	지방세	51,460	75,590	104,070	83,680	92,000	406,800
	세외수입						
지방채							
기 금							
공기업 특별회계							
민간자본							
해외자본							
기타 (채무부담, 민자 등)							